

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

사용자	성명(명칭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소속기관
	주소	
등록번호	허가기간	
차명		
운행목적		
운행구간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을 허가 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직인

소유자의 주의사항

- 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.
- 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에서 제거해야 합니다.
-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비고

- 재질은 접착식으로 합니다.
- 접착제는 비갈부분에만 칠합니다.